##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70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이성권・이헌승・박수영

조승환 · 김도읍 · 최은석

곽규택 • 정성국 • 정연욱

권영진 · 김용태 · 주진우

서지영 • 배준영 • 신성범

강명구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 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법률 제 호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u>&lt;삭 제&gt;</u>
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	
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u> 적용한다.</u>	